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16
----------	----

제출년월일인 : 2006. 10. 16

제출일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1. 제안사유

- 가. 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민, 사업자 및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하고
- 나. 1992년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강령인 의제21(Agenda21)이 채택되어 전세계적으로 의제21의 실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환경보호 이념속에 제반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수립·시행함(안 제2조)
- 나. 구 및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 다.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코자 함(안 제10조)
- 라.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 지원(안 제18조)
- 마. 환경시책의 내실화와 홍보를 위해 “환경백서” 발간(안 제20조)
- 바. 환경시책의 수립·집행·감시활동을 제도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안 제21조 내지 제3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6. 9. 4 ~ 9. 25(21일간) ▷ 제출된 의견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민, 사업자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 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구의 환경보전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본래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구의 책무)**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국가 및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환경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과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환경보전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0조 (환경기본계획)** ①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구민, 사업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 ③구는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3조 (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 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①구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및 피해의 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보전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기술의 교류 등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환경교육·홍보 및 정보의 공개)** ①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백서 발간)**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 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등

### 제3절 환경보전자문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21조 (설치)**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 등 관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맑고푸른사하21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은 지역주민, 환경관련 전문가, 기업체 임원,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관련분야 교수와 유관기관 환경관련업무 관계자 등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 (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현황
2. 회의안건과 그 내용
3.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표결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의 관련사항

**제29조 (의견청취)** 구는 위원회 운영과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